

보건복지동향

2005. 7. 21 ~ 2005. 8. 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활성화 정부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마련하여 7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7월 22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동 법의 제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
- 동 법은 금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하위법률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중 고령친화산업분야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

「고령친화산업지원법(안)」 주요내용(총4장 제20조로 구성)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진체계(안 제2조, 제5조~6조)

- 범정부적으로 집중지원 할 고령친화산업 8대 산업분야 제시
- 고령친화산업을 산자부 등 11개 부처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안 제7조~9조)

-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

장경쟁력 강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 운영(안 제11조~제12조)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화 연구 등 고령친화산업체 실질적 지원업무 수행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안 제14조~제18조)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수제품개발 및 서비스 개선의욕 제고와 고령소비자의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선택 기회 제공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제품 서비스 우선구매, 기술개발 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 도모

〈기대효과〉

- 산업체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체계적 지원정책 추진으로 시장 진입에 따른 어려움의 적극적 해소 가능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R&D 지원 등으로 산업체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 고령소비자의 경우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표시제도 도입 및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으로 안심하고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 선택기회가 확대될 것임.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 중 일부과제 확정”

'05년 7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 개선과제 중 일부과제의 추진방안 합의하였다.

-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및 전문분과협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의료제도 개선안 중 일부에 대해 당정협의.
- 지난 5월 발표한 주요 검토대상 과제 중 의료제도 분야의 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여기서 5개 의료제도 개선 과제는 의료기관 중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 합리화(관계부처협의 필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 의료 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임.

비만은 한국인 암 발생의 주요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운영숙 교수팀은 공동 연구 결과 “비만은 한국인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 비만은 우리나라 국민의 다양한 암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 비만한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1.9배, 간암은 1.6배, 담도암 2.2배, 전립선암 1.9배, 갑상선암 2.2배, 폐의 소세포암 1.5배, 임파선암 1.5배, 흑색종(피부암) 2.8배 높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에게 비만의 심각성을 알리고, 비만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05. 3. 31)됨에 따라 목욕장업에 편입·관리된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용사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5. 7. 25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의견 제출기간 : '05. 7. 25 ~ 8. 13(20일간)

-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영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일 장소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특히,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함(다만, 보호자 동행인 경우에는 예외).
- 목욕장 내 주류 판매 및 반입 불허

- 목욕장 내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 편의시설은 각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 이번에 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추진절차를 거쳐 빠르면 금년 내에 시행할 계획임.

공단, 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편의정보 추가제공

- 홈페이지에서 건강강좌, 전문의별 진료시간 등 11가지 항목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7월부터 공단홈페이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원특성을 반영한 건강강좌, 접수시간, 진료과목별·전문의별 진료시간 인터넷 주소연계 등의 항목을 추가한 11가지 항목 「병원용 의료이용 편의정보」를 추가 개발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편의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내 “건강마당 ⇒ 병원/약국 정보 ⇒ 병원/약국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05. 7. 20 현재 15,758개소 의료기관(약국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의 약 30.4%)이 참여.
- 정보제공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의원 7,296개소(46.3%), 치과의원 3,496개소(22.2%), 한의원 3,184개소 (20.2%), 보건기관 1,277개소(8.1%), 병원급 이상 기관 505개소(3.2%)로 파악.
- 의료이용편의정보는 요양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정보만이 제공되므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입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또한, 공단은 '04.8.1부터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교통정보 등 8가지 항목 「의원급 의료이용 편의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

미신고복지시설 중 70%가 신고시설로 전환 예상

보건복지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 의하면 2002년 6월 이후 시·도를 통해 파악된 미신고복지시설 1,288개소(22,000명 생

활) 중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213개소, 신축, 증·개축 등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이 586개소, 전환이 어려운 시설이 387개소, 자진폐쇄 95개소, 강제폐쇄 7개소로 나타났다(전환율 70%).

※ 신고시설 현황 : 1,213개소, 86,116명 생활중(정원 103,903명)

- 보건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의 70%가 제도권내로 진입함에 따라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운영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유예기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별로 지속적 양성화 또는 시설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또한,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운영시설을 기존 법인시설과는 별도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는 시설의 입소를 요하는 복지대상자 및 보호자가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운영시설과 국민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www.bokjisul.or.kr)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며 미신고시설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은 민관합동 사회복지시설 발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시행

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감시·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이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727) 및 시행규칙(728)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등에 포함된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에 걸린 동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부자·천오·초오·백부자·섬수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그 판매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
- 또한, 앞으로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식품을 회수하고, 동 위해사실 등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

- 아울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현행 3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되는 반면,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위해와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하절기 사회안전망 실태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중산·서민층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실성 있는 대책마련과 관련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주요 점검사항은 공통분야, 기초생활분야, 노인아동분야, 장애인 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됨.
- 이번 탐방결과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설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정책수립 책임자들의 현장 탐방을 정례화하여 정책과 민생현장 간의 상시적 커뮤니케이션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보건복지통계 공표 사전 예고제 시행

보건복지부는 8월 1일(월)부터 통계 생산의 시의성을 제고하고 통계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보건복지통계 공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소속기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부승인통계 48종을 대상으로 공표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예고하고, 예고된 일정에 따라 해당 통계자료를 생산·공표하게 됨.
- 이의 시행으로 복지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통계가 생산됨에 따라 보건복지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계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복지부는 연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정책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

건강보험 소득 축소·탈루 의심되면 국세청에 자료 통보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가 오는 7월 28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보건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추천하는 5인의 위원이 참여하여, 소득의 축소·탈루 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국세청에 통보 여부를 결정하게 됨.
-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 축소·탈루 자료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인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 해당
- 보건복지부는 소득의 축소신고 또는 탈루의 정도가 현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

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를 우선 통보대상으로 하되, 사례 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에 중점을 두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경제활동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략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 : 2005. 7.29~8.17

- 이법 법개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자활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빈곤층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음.

〈법개정으로 확대되는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빈곤탈출 유인을 강화하고,
-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도입·지원함으로써 일할 기회를 확대.
 - ※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고용·운영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지원
- 또한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형성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 ※ Micro-credit,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근거 마련
-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확대하고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공무원 배치의무를 둬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04~'05), 자활후견기관협회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주요사업을 중앙자활센터 사업으로 조정,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

- 이번 법률개정안은 자활지원 확대와 동시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재 강

- 화도 담고 있음.
- 이번 법개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전국적으로 특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이하여 국민불편 개선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7월말부터 1개월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약국과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 의약분업원칙 훼손우려가 있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 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예외지역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외지역 운영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
- 이번 특별점검은 4인 1조로 편성되어 총 16개조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05년 7월말부터 8월까지 1개월간 실시.
 - ※ 점검반 구성은 총 64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16명(보건 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청 16명(의약품안전국), 시·도 16명(시도별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명이 투입
- 이와 별개로 지역별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총 1,000여명) 등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토록 추진할 계획.

의사의 비전속 진료 허용추진 -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 -

정부는 8월2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의 6개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 6개 제도개선과제로는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민 진료 허용,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정보화(e-Health)기반 마련
 - ※ 첫 번째와 두번째 과제는 당정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추진
-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 추진

의사자격 예비시험제도 시행

-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국내대학에서 수학한 수준의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검증한 후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시험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보건의료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수학한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수성과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수기 등을 습득토록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
-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 수가 국내 졸업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인력의 과잉공급가능성에 대하여도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비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는 의학적 기초와 한국어능력을 검증하는 필기로 하고, 2차는 진료에 관한 기본적 기술수기를 평가하는 실기로 하되,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예비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함.
-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8월중 예비시험에 대한 시행계획공고를 거쳐 9월중 첫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비시험 첫해인 금년에는 의사 40여명, 치과의사 200여명 정도가 이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웹사이트 '아가사랑' OPEN

보건복지부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예비부부 및 임신부부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아가사랑' (www.아가사랑.net / www.aga-love.org)을 8월 9일 오픈한다.

- 새로 구축된 포털사이트 '아가사랑'은 아래와 같은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
 - ▶ [출산지원시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공지
 - ▶ [정보센터] : 결혼·임신·태교·불임·분만·산후조리·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 [성장발달체크] : 아이에 대한 건강과 성장 체크서비스
 - ▶ [의료기관/보육센터] : 지역별 보건소과 산부인과·소아과 병원, 조산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검색 서비스
 - ▶ [임산부교실] : 회원들에게 정보전달을 위한 동영상서비스
 - ▶ [커뮤니티] : 회원 간의 정보공유 및 교환장소 제공
 - ▶ [회원별 이메일 발송서비스] : 회원별 맞춤형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향후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적 정보체계를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오픈 후에도 정보콘텐츠 개발과 SMS 알림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을 추가할 계획.

「혈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2005.8.9(화)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우선,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둘째,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되어 온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하여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하며, 셋째,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 발생의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현행의 신고 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05.8.29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의견을 복지부 혈액정책과로 제출하면 됨.

복지부, 금년 의료기관 평가 10월부터 실시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제1차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05. 8. 9)하여 '05년도 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 평가기준, 평가단 구성 등 의료기관 평가계획을 확정하였다.

- 평가대상 기관은 대형병원 34개소 및 중소병원 46개소로 확정하고 10월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현지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 평가기준의 내용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질 향상 등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및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
- 평가요원은 자질확보를 통한 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의료기관에서 퇴직한 간호사 등을 선발하여 일부를 상임요원화 함.
- 의료기관평가 결과는 '06년 1/4분기에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권 신장, 의료기관의 질 향상 촉진을 위하여 평가기준별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계획.

공동모금회, 전북지역 집중호우 이재민에 3억 6천여만원 긴급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8월3일 발생한 전북지역의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이재민 1,5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긴급생계비와 사망자 위로금 1백만원(7명 발생), 부상자 30만원씩, 자원봉사 복구지원비 5천만원 등 총 3억6천4백80만원을 긴급지원키로 결정했다.

- 이번에 지원되는 긴급지원비는 공동모금회 전북지회가 2억2천4백80만원을 비롯 중앙회 7천5백만원, 7개 지회(서울,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남, 경북)가 6천5백만원의 성금을 모아 조성된 것으로, 공동모금회 전북지회를 통해 이재민에게 전달되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천1세대 중 피해정도가 심한 1,500세대와 사망자, 부상자에게 우선 지원.
-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최고 354mm의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공동모금회는 지난 8월 10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을 결정. 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은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재해' 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006 최저생계비, 2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117만원(평균4.15% 인상)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하여 「2006년도 최저생계비」와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을 위원들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418천원이며, 2인가구 700천원, 4인가구 1,170천원 등임. 이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보다 평균 4.15%를 인상한 금액으로서, 2005년도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작년에 '05년 최저생계비 결정 시 가구균등화지수를 OECD기준으로 5년에 걸쳐 상향조정(총 6.0%인상 효과)하기로 하여 올해 인상분을 반영한 수치로 이에 따라 수급자가구 중 비중이 높은 12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인상폭이 높아지게 되었음.
- 내년도 현금급여기준도 1인가구 358천원, 2인가구 600천원, 4인가구 1,001천원 등으로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평균 4.15% 인상 결정.
-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있음.

1339와 119, 병원전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시행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병원 도착 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위해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구급대 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현장 및 이송단계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 개선방안은 <1339와 119 연계체제 혁신TF>운영으로 마련된 것으로, 119구급대 중

응급구조사를 확충하고, 응급환자 이송중 통신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를 활성화하는 등,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환자의 이송단계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중 응급환자와 119, 1339간 3자 통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호 혁신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진행상황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는 사회 양극화 및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금번 조사의 특징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정부에서 실시한 최초의 조사로, 조사대상은 전국단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3만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한 대규모조사이고, 정책 대상으로서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의 조사임.
- 조사결과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263만명으로 추계되고, 현재 재산까지 고려한 정책대상을 정확히 추계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진행중이며 동 조사결과는 10월중 마무리될 예정.
- 조치계획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 양극화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마련중이며 방안이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

2005년도 모자보건사업 평가대회 열려 - 전국 모자보건 담당 공무원 400여명 참석

보건복지부는 2005.8.18(목)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모자보건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저출산에 대응하는 인구자질향상 사업인 모자보건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서경(56세, 남)교수 등 47명의 유공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 또한 2004년도 모자보건사업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우수 기관인 전라남도 및 (주)매일유업 등 20개 기관도 포상함.
- 이어서 이틀간 전국 모자보건사업담당관 및 전문가 등 3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방향” 주제발표와 “고위험 임신의 의학적, 환경적 요인 및 현황” 등 5개 주제로 인구자질향상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행사를 통하여 일선담당자들은 업무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함과 아울러 지역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중간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감기약(페닐프로판올아민, 일명 PPA) 사건을 교훈삼아 의약품 안전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그 중간결과를 이번주 목요일(18일) 3시에 한국 제약협회 강당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 동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가 주관연구자로서 참여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첫째 과거 공급자(의사, 약사, 제약업소 등) 중심의 관리에서 사용자(소비자)에 대한 관리로 개념을 확대하여 의약품 자체 부작용관리는 물론 제조 및 처방·조제 과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의약품 위해(危害)를 최소화하도록 의약품 안전 관리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셋째 정보 수집 및 분석·연구를 통하여 지식에 근거한 근거중심의 위해(危害) 관리 방안을 제시.
- 동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보건복지부는 부작용 우려가 심각한 의약품에 대하여 의사·약사·환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품질 불량 우려의약품에 대한 제조자(수입자)의 자발적 회수(Recall) 강화, 의약품 부작용 보고 강화 및 분석평가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및 이해 용이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의약품 위해(危害)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등 국민건강위해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보건복지부는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8. 22일부터 각각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의약품유통관련 비리 및 식품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분야별로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불법의료행위 및 국민건강위해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
- 보건복지부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국민건강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 및 국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APEC 국제심포지엄 개최

-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발전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APEC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한국은 APEC 의장국인 올해에 세계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자유무역, 노동시장 변화 등에 관한 포괄적인 토론을 장려할 목적으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기획.
- APEC 회원국 실무자, APEC 사무국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 관계자, 학자,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은행(World bank)의 전문가 등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세계화로 인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전통적인 대립관계의 변화,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의 개선점 등에 관해 논의하고 가능한 개선책을 숙고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임.
- 또한, 한국 정부의 사회안전망 실무책임자(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정책총괄

과장)들은 양극화와 세계화의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안전망 개혁방향을 제시.

『안경법인에게도 안경업소 개설 허용』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안경사만이 안경업소 개설이 가능하던 것을 안경법인도 허용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르면 '06년 7월경에 도입.

<주요 내용>

-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소규모 안경업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하도록 함.
-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안경사들로만 제한되고 자기자본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 또한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상법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보건복지포럼

매월 발행되는 『보건복지포럼』은

21세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정책 전문지**입니다.

2005년 9월호 (통권 제107호)

등록번호 라-8010

등록일 1996년 10월 1일

발행일 2005년 9월 1일

편집인/발행인 원장 직무대행 원종욱

편집위원장 이상영

편집위원 황나미 서동우 원종욱
신영석 송태민 이삼식
고경환 김미숙

편집간사 석재은

편집/제작 박효숙

인쇄 대명기획(TEL: 2263-1292~3)

가격 4,000원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대표전화 (02) 385-7371, 3808-257

FAX (02) 352-2181

E-mail kihasa@kihasa.re.kr

정기구독안내

■ 신청방법

간행물관리실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FAX 또는
“<http://www.kihasa.re.kr/book/book03.jsp>”로
들어가서 인터넷상에서 직접 가입하세요.

전화번호 : 02) 353-1570

02) 3808-308

F A X : 02) 352-9129

주 소 : 122-705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관리담당

■ 구독료

권당가격은 4,000원이며, 연간 구독료는 13,000원이
합인된 35,000원입니다.

■ 구독료 납부

우리은행 019-219956-01-014

■ 정기구독을 하시면

매월 원하시는 곳에서 책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보건복지포럼』을 포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한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